

언론 사람

11

2020
VOL.245



04 인터뷰 人+人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진실의 결정자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감사(Audit)

08 세상사는 法
공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14 단어의 중력
선택

- 04** 인터뷰 人+人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 06** Newmedia of the World
진실의 결정자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감사(Audit)
- 08** 세상사는 法
공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 10** 돋보기
중양질의 단상

- 12** 이달의 시
고요하고 적막한
우리들의 등(背)을 만난다는 것
- 14** 단어의 중력
선택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개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제주 산금부라> 박동휘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풍

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먼 산에 단풍

물드는

사랑

-안도현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의 가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Q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교수님 근황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A 건강 유지에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희대 법전원에서 한 학기에 두 번 헌법 특강을 하고 있는데, 금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영상강의를 하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져 강의 재미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나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헌법론’과 ‘헌법소송법론’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해 평소에 꾸준히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고, 사양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기고글을 쓰거나 가끔 외부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Q 한국 헌법의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지금 헌법은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합의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33년이 흐르다 보니 시대사상과 국민감정이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당마다 생각이 다르고 학자들도 견해가 각각이어서 현재로서 가능성이 크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당리당략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국회에 여야동수로 ‘개헌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기본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코로나 이후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며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방역의 1등 공로자입니다.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분명한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헌법(제21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마치 정부의 허가사항처럼 금지하거나 과잉 단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목적의 실현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언제나 과잉금지 원칙과 특히 비례성, 실효성, 수용성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국민의 정치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집회·시위의 금지는 헌법(제37조제2항)이 금지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과 정책 방향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Q SNS상의 차별·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현행 헌법은 Off-Line 시대의 헌법입니다. 지금처럼 On-Line을 통한 의사 표현이 일상화된 상황을 예정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 매체의 형태 변화로 인한 헌법규범과 현실의 갭(Gap)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SNS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을 해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남을 비방하며 상처를 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IT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에게 SNS상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허위조작 게시물은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통신품위법(CDA)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SNS 이용자의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윤리적 인격체로 생활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기초이며 전제입니다. 도덕적인 품성을 지니지 못한 채 기본권을 악용·남용함으로써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파괴한다면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행사한다는 것은 모든 기본권에 내포된 당연한 '묵시적 도덕유보'입니다. 이같은 '묵시적인 도덕유보'에서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국민의 윤리적 의무가 나옵니다. 윤리적인 생활 주체로서 SNS 이용자는 익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표현의 자유의 행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제21조제4항)도 이런 취지로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죠.

Q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 그런 논의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 언론보도'라는 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데 보도 주체인 언론매체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인이 어떻게 그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1년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입장에서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판결로써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Q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면?

A 두말할 필요 없이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여론형성에 중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만 언론매체도 운영 주체와 매체의 가치관에 따라 편향성이나 경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언론관계법에서 편향적 불공정 보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언론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공영방송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매체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의 평가가 나쁜 이유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언론환경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언론매체를 하나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환경이 그런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언론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내년이면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언론피해구제제도가 헌법적 가치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할 때 이익형량을 통해 규범조화적인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대체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이익형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한 특정인을 향한 사적인 감정표현인지, 표현이 사적 또는 공적인 생활영역에 관한 것인지, 표현형식과 과정, 공인의 경우 정치인인지 직업관료인지 연예인인지, 표현의 구체적인 영향 범위, 표현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표현이 나온 구체적인 배경, 선택한 표현의 질(흔히 사회 통념상 금기시하는 언어 여부, Fäkal Sprache) 등입니다. 최선의 길은 언론 분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이 윤리적인 생활철학을 가져야 하고 언론매체도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확립해서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타블로이드 일간지 뉴욕포스트의 기사 한 건만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아들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기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플랫폼들의 대처 방식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 기사가 지난 10월 14일 공개되자 그들 플랫폼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으로 재빠르게 제동을 걸었다. 해킹된 이메일에 근거한 '정책 위반' 콘텐츠라는 이유에서다. 트위터는 수일 만에 이 조치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혹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21세기의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민들이 무엇을 볼지 아닐지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이미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뉴욕포스트 기사의 확산 제한 조치처럼 어떤 뉴스를 증폭시킬지 혹은 억제할지 플랫폼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다. 알고리즘은 이처럼 콘텐츠의 차단부터 확산의 속도 조절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의 볼 것들에 개입하고 있다. 비록 이번 조치가 허위

진실의 결정자가 되고 있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감사(Audit)



조작정보의 유포 확산을 차단하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방법을 플랫폼 측은 투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나이가 공중의 알권리와도 직결되기에 그렇다. 페이스북은 그간 IFCN(국제팩트체커네트워크)과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투명한 허위 조작정보 차단 절차를 준수해왔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선조치를 취한데 대한 설명도 부족한 상황이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 권력은 공동체와의 '인식 괴리'가 커질수록 독선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들이 정의(Define)하는 정의(Justice)와 시민이 인식하는 정의(Justice)가 조율되지 않고 멀어질수록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볼 것, 들을 것, 인식한 것을 그들의 정의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선택과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선전·선동,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제한이라는 건강성에 기반해 이뤄진 결정 조차도 투명성이 배제될 경우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시사한다.

이즈음 흥미로운 알고리즘 역감시 프로젝트 한 건이 시동을 걸었다. 비영리 기술 감시 탐사저널리즘 미디어인 <더 마크업(The Markup)>이 '시민 브라우저 프로젝트'(Citizen Browser Project)³⁾를 시작했는데, '어떤 뉴스와 정보가 플랫폼에 의해 증폭되고 은폐되는지' 기술의 도움을 얻어 답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적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두 개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1,200명에 달하는 시민 패널들에게 데이터 수집을 위한 특수 목적 브라우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그들에게 노출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결과물은 뉴욕타임스와 공동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개인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정보들은 동일하지 않다. 플랫폼들의 배열 알고리즘은 그들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

형 방식으로 작동한다. 100이면 100 모두 다른 콘텐츠와 정보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어떤 정보가 어떤 이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증폭되고 제거됐는지 좀체 측정하기 어렵다. 오로지 플랫폼 사업자들만이 들여다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이 역공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추천·랭킹 알고리즘 일면이 드러나게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기술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노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속으로 숨겨버리면 알아낼 길도 없다. 여기에 투명성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면 판옵티콘 그 이상의 권력으로 변모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구체적 반영 요소가 노출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입을 단아버리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더 마크업의 창업자인 줄리아 앵그윈(Julia Angwin)은 플랫폼이 답하지 않는 다음의 질문들을 공중의 알권리를 위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정치 기사가 격전 지역의 흑인 유권자들에게 더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건강 정보가 중년 여성들에게 타깃팅 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그룹이 텍사스 젊은 유권자들에게 추천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 절박감은 어느 때보다 깊어 보인다.

전 세계 인터넷 공동체는 '진실의 결정권'을 플랫폼 기업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것의 고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많은 주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만 도달이 가능하다. 개별 대형 기술 기업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독단적으로 판단해 제공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고리즘을 감시하는 공공의 기술적 노력들이 더욱 긴요해진다. 또한 그것은 저널리즘의 책무이기도 하다.

더 마크업의 활약은 플랫폼의 독선을 견제하려는 저널리즘 진영의 부단한 노력이기도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만큼이나 알고리즘 권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내 저널리즘 주체들의 기술적 무장이 더 마크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빨라지길 바라본다.

1) <https://nypost.com/2020/10/14/email-reveals-how-hunter-biden-introduced-ukrainian-biz-man-to-dad/>

2) <https://www.facebook.com/journalismproject/programs/third-party-fact-checking/selecting-partners>

3) <https://themarkup.org/citizen-browser>



공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유방확대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던 A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A는 인터뷰 내용은 보도해도 괜찮지만, 대신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언론사가 이에 동의해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서도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내보낸 데서 발생했다. A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자신을 알아봤다며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대법원 1988. 9. 4. 선고 96다11327). 보도는 공익성이 있지만, 보도의 공익성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커

서 보도가 위법하다고 봤던 약 20년 전의 판례이다. 유방확대수술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마는, 굳이 유방확대수술 받았다고(게다가 후유증도 앓고 있다고) 보도되고 싶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사생활이기 때문이다. 이 판례가 주는 실무적인 매뉴얼은 명확하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면, 음성 변조도 같이해야 된다.' 분명해서 고마운 지침이다.

그런데 요새는 익명 보도라고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사가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아무리 잘해도, 보도된 정보들

을 조합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언론사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보도 대상자가 사인이고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다면, 언론사는 피해자 특정이 되는 정보는 되도록 피해해서 보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보도 가치가 높은 정보일 때이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를테면 특정 정보를 밝히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밝히지 않으면 보도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말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OO' 표시를 눈여겨봐 주기를 바란다). 2018년 한 언론사는 '국내 대기업 OO회사 OO 직급 OO(성별) 임원 B는 회식 자리에 OO 직급인 부하 직원 C의 참석을 강요했다. 회식 자리에서 B는 C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라고 강요했다.'

B는 OO년에 OO 직위로 승진했고, 회식 강요를 참지 못한 C는 OO년에 퇴사했는데 OO회사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C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사에 제보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은 다른 아닌 피해자 C였다. C는 이 일이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보도가 나간 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라고 알려진 것이다. 또한 C는 제보자도 아니었는데 마치 제보자처럼 보도가 되어 주변 사람들한테 '배신자'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C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열람차단 및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사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앞에서 'OO'으로 표시된 정보들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회사명, B의 구체적인 직급, B가 승진한 시기 및 직위, C의 직급, C의 퇴사 시기를 맞춰 보면, B와 C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더라도 C가 제보하지 않았는데 제보했다고 한 기사 내용이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C의 사생활 침해는 있었으나 보도의 공익성이 커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C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단 근거는, 'OO'으로 표시된 정보들이 상급자인 임원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술자리 접대 참석을 강요한 사실, 그렇지만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

실을 보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직급'이,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C의 '퇴사' 사실이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OO'으로 표기된 정보들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났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공개한 정보들은 보도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서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 보도는 선정적이거나 흥미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기업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다룸으로써 실제로 이 보도 이후 OO사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자인 임원은 사임했다. 보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C와 같이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공익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은데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를 감내시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다. 좀 더 정보를 줄이면 보도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까. 단순히 대기업이라고만 하면 해당 기업은 성희롱 문제를 계속해서 면피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기업들도 경각심을 덜 가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명은 알릴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들이었던 직급은 단순화하여 상급자는 임원으로, 하급자는 부하 직원 정도로만 밝히면 어떨을까. 퇴사 사실만 밝히되, 퇴사 시기는 밝히지 않으면 어떨까. 이 정도만 보도해도 문제를 알릴 수 있고, 회사는 못매를 맞을 것이고, 내부 감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한편 이 사건은 접대를 강요한 임원이 '여성'이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더 샀는데, 만약에 임원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직급은 보도되지 않았다면 성별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회사 내 여성 임원이 많지 않아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식을 강요한 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감정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공익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위 언론보도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어 나름의 개선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전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희롱 피해 사실이 공개된 것일 뿐이다. 성희롱이나 성범죄 보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히나 공익과 개인 간의 조율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연 필요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언제나 모든 주의를 다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양절의 단상

음주(飲酒) 제칠수(第七首) 술을 마시고 제7수

동진(東晉) 도연명(陶淵明, 365-427)

秋菊有佳色, 추국유가색
가을 국화가 아름다운 색을 지녀,

裛露掇其英. 음로철기영
이슬에 젖으며 그 꽃잎을 따.

汎此忘憂物, 범차망우물
이것을 술에 띄워 마시니,

遠我遺世情. 원아유세정
세속을 버린 나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一觴雖獨進, 일상수독진
술 한잔을 비록 혼자서 들지만,

杯盡壺自傾. 배진호자경
잔이 비면 술병을 스스로 기울인다.

日入群動息, 일입군동식
해 지자 온갖 동물들이 쉬러 가니,

歸鳥趨林鳴. 귀조추임명
돌아가는 새들이 숲을 향하며 지저귄다.

嘯傲東軒下, 소오동헌하
동쪽 창 아래에서 시 읊조리며 자득하니,

聊復得此生. 료부득차생
그런대로 다시 이 삶에 만족하노라.

음(衰) 젖다. '음(溼)'과 통한다.

철(掇) 꺾다, 따다.

소오(嘯傲) 시를 읊으며 구애됨이 없는 모습이다.

망우물(忘憂物) 근심을 잊게 해 주는 것, 즉 술의 대명사이다. 도연명의 윗 시에서 유래된 단어로, 조조가 <단가행(短歌行)>에서, “무엇으로 근심을 풀 것인가, 오직 술이 있을 뿐이다.(何以解憂, 唯有杜康.)”라고 하여 술의 효능을 ‘근심을 풀어 주는 것(解憂)’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올해에는 윤달이 들어 양력으로는 꽤 늦어진 10월 25일이 된다. 근래에는 명절로서의 중양절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명절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양의 수인 홀수를 좋아했다. 오행의 기본수 1, 2, 3, 4, 5에서 홀수인 1, 3, 5는 양수이고 2, 4는 음수이다. 양수인 1, 3, 5의 합이 9라서, 9는 양을 종합하고 상징하는 수가 되었다.[마찬가지로 2, 4의 합인 6은 음을 상징하는 수이다.] 양은 밝음, 높음, 바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게다가 발음이 '구(久)와 같아 오래, 장수의 의미까지 연관됨으로써, 그것이 중복되는 9월 9일을 상서로운 명절로 받아들였고 그 이름을 '중양절'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시대에는 궁중에서 '중구연(重九宴)'을 열었고 조선 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을 열어 노신(老臣)들을 위로했으며, 다섯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 중양)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

중양절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전해지고, 시문의 주제와 소재로 문인들에 의해 많이 차용되었다. 고전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양절에 관한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세시풍속을 들면, 첫째로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이다. 이후 '등고(登高)'라는 용어는 이날의 풍속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둘째, 제철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로 만든 음식을 먹는 일이다. 음식으로는 국화로 빚은 술, 국화를 띄운 술, 국화차, 국화 화전 등 다양하다. 도연명이 <9월 9일에 한가로이 지내면서(九日閑居)>에서, “술은 온갖 근심을 덜어 줄 수 있고, 국화는 노쇠해지는 나이를 잡아 준다네.(酒能祛百慮, 菊爲制頹齡.)”라고 읊었듯이 국화주에는 근심을 덜어주고 노쇠를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셋째, 수유(茱萸)를 팔에 지니거나 머리에 꽂는 것이다. 수유는 향기가 좋고 약 성분이 있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추위를 막아 주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풍속은 남조 시기 양(梁) 오균(吳均)의 <속제해기(續齊諧記)>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후한 시기) 여남군의 환경(桓景)이 도사인 비장방을 따라 몇 년 동안 공부했다. 비장방이 환경에게 이르기를, “9월 9일 너의 집에 장차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서둘러 가서 집안사람들에게 붉은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수유를 담아 팔에 묶도록 하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면 이 재앙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환경은 말해 준 대로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닭과 개, 소와 양이 한 번에 모두 죽어 있었다. 비장방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가축들이) 재앙을 대신한 것이다.”라고 했다.(汝南桓景隨費長房游學累年. 長房謂景, 九月九日, 汝家當有災厄. 急宜去, 令家多作絳囊, 盛茱萸以繫臂, 登高, 飲菊花酒, 此禍可消. 景如言, 舉家登山. 夕還見鷄狗牛羊一時暴死. 長房聞之曰, 代之矣.)

도연명은 음주시 20수를 남겼다. 음주시는 왕조 교체기의 혼란한 현실과 가치 전도의 시대에, 평정심과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기울인 노력들의 기록이다. 위에서 소개한 시는 그 가운데 일곱 번째 시이다. 중양절을 맞아 세시풍속에 따라 국화주를 마시고 대자연의 운행 속에서 휴식에 드는 모습을 읊었다. 낮 동안 활발하게 날던 새들도 저녁이 되어 쉼 곳으로 돌아가고, 시인도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게 된다. 모든 존재가 타고난 생리대로 살아가는 순응자연의 상황이다. 새는 모든 동물을 대표하여 등장시킨 한 예이자, 또한 시인 자신의 분신일 수도 있다.

티벳 망명 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만족을 제시했다. 도연명은 이 시에서 도가의 이상인 순응자연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찾았고 행복을 이루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요하고 적막한 우리들의 ‘등(背)’을 만난다는 것

나는 나의 뒤에 서고 싶다

신달자

멀고 먼 외톨이 섬
쌍칼을 들이대도 고요함만 지키는
까무룩한 등
내가 닿지 않는 곳
눈(眼) 하나 달아 주고 싶은 곳
나는 나의 뒤에 서서 나의 허리를 향해
왈칵…… 가던 두 손 멈추고
성스럽게 한번 바라보고 싶다.

- <간절함> (민음사, 2019)에서

지난해 늦가을, 신달자(1943~) 시인은 열다섯 번째 시집 <간절함>을 출간했습니다. 언제나 작품 속에 일정한 정도의 미열이 스미어 있는 그의 시는, 읽고 나면 읽은 이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아픈 듯 뜨거워지게 합니다. 이번 시집도 그와 같아서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미열을 식히느라 허공이라도 한동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달자 시인은 한 사람의 시인이자, 특별히 여성시인으로서 그 ‘미열’을 ‘금강석’으로 만드는 길고 긴 수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수련은 어느 날 ‘수행’과도 같아져서 그의 ‘미열’은 ‘아름다움의 연금술’을 이루어내는 심미적 원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함께 읽는 작품 <나는 나의 뒤에 서고 싶다>도 그런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엔 우리가 영원히 만나볼 수 없는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등(背)’입니다. 거울이 발명되기까지 인간들은 평생 자신의 얼굴을 못 본 채 살아가야 했으며, 거울이 발명되고 나서도 인간들은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은 현대적인 거울의 발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신체의 가장 멀고 외진 곳입니다.

우리에게 <털 없는 원숭이>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



우리들의 '등' 뒤에 서서 우리들의
허리를 활짝 끌어안아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드 모리스는 <바디워칭(Body Watching)>이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그곳엔 인간 신체의 거의 모든 곳이 동물학자의 시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문학자처럼 곳곳에서 '신체의 인문학'을 울림 있게 펼쳐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등'을 다룬 부분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모리스는 이 등을 다룬 부분에서 '등'이야말로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적게 알려진 부위'이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등'은 멀고 외진 곳에서 '소외와 진실'에 대한 사유와 철학을 가능케 합니다.

신달자 시인의 시 <나는 나의 뒤에 서고 싶다>를 읽는 데엔 이런 '등'에 대한 탐구가 도움이 됩니다. '등'은 인간 종의 진화사 속에서 육신의 영역을 넘어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달자 시인은 이런 등을 가리켜 '멀고 먼 외톨이 섬', '쌍칼을 들이대도 고요함만 지키는 존재',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시선 너머의 이역', '눈(眼)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싶은 무심과 적막의 지대'와 같다고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담아서 전합니다. 시인의 '등'에 대한 이와 같은 마음과 발견은 그의 정신적 높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는 신체의 마지막 소외지대를 만나고 품어 안음으로써 마침내 온전한 자기애와 인간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신달자 시인은 그와 같은 자신의, 아니 우리들의 '등' 뒤에 서서 우리들의 허리를 활짝 끌어안아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덧붙입니다. 나는 나의 등 뒤에 서서 이런 나를 '가던 두 손을 멈추고', '성스럽게 바라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것은 물론 미적 거리 속에서 자신을 성스러운 마음으로 품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서 우리는 때로 과도한 나르시시즘에 경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신달자 시인이 멀고 외진 곳의 '등'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만나는 고차원의 길을 열어 보인 것은 무척이나 시사적입니다. 여기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속담은 일차적 진실만을 전하는 세속의 언어가 됩니다.

이 늦은 가을날에,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멀고 외진 곳'에 있는 '등'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우리의 영혼이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사진 제공 : 황경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쿼이아 국립공원의 터널 로그

인생은 B(Birth)로 시작해 D(Death)로 끝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신이 B와 D 사이에 C(Choice)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 Jean Paul Sartre -

선
택



‘문제는 그 선택의 폭이, 언제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다는 것이지.’

사르트르의 저명하고 자명한 글귀를 바라보며 너는 생각한다. 이를테면 삼 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지내온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남은 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를테면 육 년을 살았던 집의 주인이 전셋값을 올렸을 때,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를테면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가던 사람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라는 철학적 해석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세쿼이아 국립공원에서 네가 처음 들은 주의사항은 곰에 관한 것이었다. 먹을 것을 지니고 다니지 말라, 곰이 달려든다, 먹을 것을 차에 넣어두지 말라, 곰이 차를 부순다, 먹을 것을 흘리지 말라, 곰이 쫓아온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주의로 인해, 혹은 곰의 알 수 없는 충동이나 변덕으로 인해 공격을 받을 경우, 도망가거나 기절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싸워달라는 것이 안내원의 충고이자 부탁이었다.

“그럴 경우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곰과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너는 물었다. 안내원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꽤나 성가시고 귀찮다는 걸 곰한테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지요.”

세쿼이아 국립공원에는 두 그루의 유명한 나무가 있다. 물관이 꼭대기까지 이르지 못해 수분의 반 이상을 안개에서 얻는다는 제네럴 셔먼나무는 키 83.3m, 지름 10m로, 약 2,500살로 추정되며 지금도 나이를 먹어가는 중이다. ‘터널 로그’를 이루고 있는 나무는 83년 전에 자연재해로 뿌리가 뽑혀 쓰러졌다. 도로를 가로막은 거대한 나무를 둘러싸고,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잠겼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어 자동차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높이 2.3m, 너비 5.2m의 나무 터널이 생겼다.

가릴 선(選)은 쉬엄쉬엄 갈 착(紿)과 유순할 순(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순(巽)은 탁자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린 글자이다. 암전히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에서 ‘가리다’, ‘뽑다’는 뜻으로 쓰인다. 가릴 택(擇)은 손 수(手)와 엇볼 역(睪)이 결합한 것으로, 역(睪)은 죄수를 눈으로 감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죄수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가능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손으로 가려 뽑다’, ‘구별하다’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택(選擇),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이고,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환경과 조건 등에 맞는 생물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어 없어지는 현상이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마지못해 고르는 일이다.

삶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불확실한 것은 미래이다. 멀찍한 길 한복판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가 막힐 수도 있다. 너는 그 길을 포기할까, 혹은 나무에 구멍을 내어 새로운 길을 만들까? 숲 한가운데서 곰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너는 순순히 죽을까, 혹은 싸우다 죽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무가 쓰러졌다는 사실, 곰을 만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달라지지 않음에 대해 너는 좌절할까, 혹은 그래도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뻐할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선택이라는 신의 선물은, 삶을 행복하게 하기에 미흡하고, 죽음을 막기에 옹졸하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저 마지막 질문에 달려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없어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의 미세한 결이 달라진다. 그 결이 물결치며 소란함과 고요함을 만든다.

그러므로 너는, 네게 허락된 삶의 좁은 통로를 걷는 내내, 마음을 다해 가름하고 구별하고 뽑아야 한다. 달라지지 않은 것들 안에서, 홀로 달라질 수 있도록.

개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있었다. 인천에서 제일 좋은 여상을 나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꿈도 재능도 있지만 사회에서 이들을 보는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2001)는 '지방 출신'의 '고졸', '여성'들이 '저부가가치 인간'이라는 편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일상을 조명해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스무 살 청년들 특유의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잘 담아낸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팬덤 문화까지 만들어 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20년 전 여성 서사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영화 속 인물들이 견뎌야 했던 시선만큼이나 싸늘했다.

지난달 말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감독 이종필, 이하 '삼진그룹')은 상고 출신 여성들의 대기업 생존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교 1, 2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주인공들의 상황, 그 편협함을 딛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에너지가 '고양이를 부탁해'의 그것과 닮아있다. 그러나 스타

캐스팅 없이 90년대생 여배우 세 명을 앞세워 평균 상업 영화 규모(총제작비 79억 원)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영화계와 대중들의 취향이 변화하고 있음도 느껴진다. 물론, 훌륭한 각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다. 개성 있는 캐릭터, 코믹한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잔재미 속에 사회적 메시지가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작품으로, 안정적인 연출력이 돋보인다.

생산관리팀 '이자영'(고아성), 마케팅부 '정유나'(이솜), 회계부 '심보람'(박혜수)은 국내 굴지의 기업, 삼진그룹의 사원이라는 자부심과 그들의 하루를 채우는 허드렛일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다른 직원들의 입맛에 따라 커피를 타고, 나르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것이 입사 8년 차의 일이니, 토익 점수 600점을 넘겨 대리로 승진하겠다는 꿈은 요원하기만 하다. 현실주의자인 유나는 퇴직금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자영은 승진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그러나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 회사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폐

수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자영은 고민에 빠진다. 회사는 공장에서 방출한 폐놀의 양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수학 천재 보람의 계산으로는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영 일행은 그때부터 이 사건의 뒤를 캐기 시작한다. 말단 사원들이 접근 가능한 한정된 문서들을 하나둘씩 주워 담고 끼워 맞추면서 이들은 거대한 진실에 접근해 간다. 아니나 다를까 폐놀 방류 사건 뒤에는 환경오염을 넘어서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폐놀 방류는 90년대 초 구미공단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한 대기업이 낙동강 수원지로 몰래 흘려보낸 폐놀의 살균제인 염소와 반응해 악취를 풍기면서 기업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국내 최대의 환경 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삼진그룹'은 단순 업무만 요구당했던 사원들이 이러한 회사 비리의 해결사가 된다는 설정을 통해 학력만으로 능력을 재단하는 인사 시스템을 조롱한다. 고졸 사원들에게만 의무화된 자주색 유니폼은 신라시대 육두품의 비색 관복마냥 이들의 신분적 한계를 시각적으로 규정한다. 즉, 유니폼으로 직원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 차별주의에 기인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이런 부끄러운 규칙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영화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무 능력, 빠른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불합리성을 꼬집는다.

'삼진그룹'은 도입부에서 고졸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익 교실 안을 보여준다. 자영, 유나, 보람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서로 다른 성격과 꿈을 가진 이들 개개인은 회사의 시점에서 미미한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세 사람이 뭉쳐 회사 비리의 거대한 배후를 캐게 되고, 이 일에 더 많은 동료들이 합세하면서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 영화 후반부, 징계를 받고 있는 자영의 눈앞을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가 개미 떼로 바뀌는 부분은 맥락상 소위 '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도 연합하면 주식회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졸 여사원들도 연대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삼진그룹'의 빼놓을 수 없는 미덕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로서 90년대 여성들의 직장 생활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남성과 여성을 편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세대와 신세대를 구분 짓지도 않는다. 이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것은 어느 한 부류의 인간들이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었던 해묵은 가치관과 낡은 관습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의식 수준은 많이 발전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에서 시시각각 기막힌 사건들과 억울한 사연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족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20년 후, 부디 202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작품이다.



위원회 뉴스

2020년도 국정감사 수감

10월 22일 국회에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에 대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중재부 증설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석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매체 수에 비례해 조정신청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매체 환경을 고려해 중재위원 증원을 통해 중재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0월 31일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독일·영국·미국·일본·호주·프랑스 6개국의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양상 및 규제 현황이 수록되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1월 13일 위원회 6층 강의실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을 주제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코로나19 국면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을 주제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권태훈 SBS 기자(감염병 보도준칙제정위원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위원회 최명진 기획팀장이 참여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토론회 현장을 녹화해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위원 동정

정은령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저널리즘 콘퍼런스> 진행

정은령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10월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 <KPF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허위 정보와 팩트’ 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정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권 위원, <2020 경기도 의회 정책토론회> 참석

박종권 위원(서울제5중재부, 호서대 시용합대학 교수)은 10월 8일 ‘코로나19 이후, 다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경기도가 수원 화성행궁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위원은 토론에서 “다산의 목민관은 자신감의 리더십”이라며 “코로나19가 부른 시대적 공포의 백신이자 치료제는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토론회 윤용근 위원 발제, 김학성 위원 참석

윤용근 위원(서울제5중재부,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은 10월 20일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대한변협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에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김학성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토론에 참석해 ‘평등의 일반화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경희 위원, 제48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출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10월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8대 차기 언론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은 2021년 10월 학회장에 취임해 1년간 학회를 이끌 예정이다.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손해배상

언론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정정·반론·추후보도와 함께 언론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도를 통해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렵거나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이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는 총 3,223건으로, 전체 청구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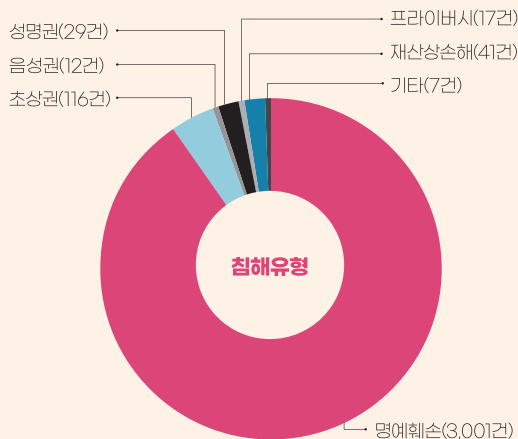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8. 1. 1. ~ 2020. 9. 30, 단위 : 원)

연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2018	250,000	9,000,000	1,960,417
2019	150,000	100,000,000 ¹⁾	4,817,442
2020. 9.	10,000	20,000,000	5,072,400

* 합의간주 사건 포함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으로 해결된 사건의 평균 조정액은 약 395만 원이었는데, 2018년 약 196만 원, 2019년 482만 원, 2020년 507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은 약 93%가 명예훼손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이 3.6%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 피해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취재 현장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위원회는 앞으로도 원만한 언론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간주된 사건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제출 마감

연구논문 제출 마감
2020. 11. 8.(일) 24:00까지

응모 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가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논문 접수

이메일 접수
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